

의안번호	제 680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
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1년 4월 13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68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1년 4월 13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개정된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에 과징금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전부 규정됨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조례

□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

(일부개정) 2000-04-08 조례 제 02577호

(일부개정) 2013-06-28 조례 제 3568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과 「관광진흥법」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1999. 7. 30, 2013. 6. 28>

제2조(과징금 납부통지) 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, 과징금의 금액, 납부기한, 장소를 명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

제3조(과징금의 납부기한) ① 도지사는 납부기한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로 부터 20일의 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특수 사정으로 인하여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. 여기서 특수한 사정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 <개정 2013. 6. 28>

1. 납부의무자가 화재, 전쟁,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때
2. 납부의무자와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
3. 납부의무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위기에 처한 때
4.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

③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결정된 경우의 납부기한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이내로 한다. <개정 2013. 6. 28>

제4조(과징금 처분대상) 도지사는 「관광진흥법시행규칙」 제43조에 따른 행정처분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0. 4. 8, 2013. 6. 28>

제5조 삭제 <2013. 6. 28>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3. 10. 8 조례 제2085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9. 7. 30 조례 제2497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0. 4. 8 조례 제2577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6. 28 조례 제3568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관광진흥법

제37조(과징금의 부과)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(過徵金)을 부과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·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

□ 관광진흥법 시행령

제34조(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)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.

② 등록기관등의 장은 사업자의 사업규모,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35조(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) ① 등록기관등의 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등록기관등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-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.

관광진흥법 시행령 [별표 3]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(제34조제1항 관련)